

검 토 보 고 서

□ 전문위원 이중감입니다.

□ 2005년 7월 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, 7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, 「**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**」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.

□ 동조례안의 제안이유는,
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 심의 등을 위한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,

□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,

-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고, 위원은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,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하고(안 제3조),
-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,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, 임기중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해촉할 수 있고(안 제4조 및 안 제5조),

-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정기회는 연 1회 이상,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,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시 소집 할 수 있고(안 제7조),
- 지역사회복지계획 심의·의결과 관련하여 전문가, 관계인, 관계 기관, 단체 등에 출석 또는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(안 제8조),
-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되, 간사는 사회복지담당과장, 서기는 사회복지담당사무관으로 하는 것(안 제9조) 등입니다.

□ 다음으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.

○ 동 조례안은,
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사업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사회복지 위원회를 설치하고,
-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등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○ 다만,

- 여성복지와 아동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여성정책관의 당연직 위원 포함 여부(안 제3조제1항 관련),
- 위촉위원의 요건중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“지역사회복지 협의체의 대표자”가 제외된 사유(안 제3조제3항 관련),

- 서기인 “사회복지 관련 담당사무관”의 구체적인 의미(안 제9조 제1항 관련)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.

□ 이상으로, 「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